해외사업규정

제정 2009.10.01 규정 제36호
개정 2011.07.28 규정 제67호
개정 2014.09.25 규정 제119호
개정 2018.03.26 규정 제17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해외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토지 및 도시의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해당사업에 관련된 용역 및 자문 등을 말한다.
2. “현지국가”란 공사가 사업을 진행(검토, 예정, 착수, 준공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외국을 말한다.
3. “사업비”란 사업에 소요되는 용지비 및 조성비와 건축비 등 해당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4. “해외사업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란 해외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해외지사 등”이란 현지국가에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현지법인, 해외지사, 해외사업단 또는 해외사업소 등을 말한다.
6. “양해각서 등”이란 해외사업 수행 초기에 현지국가의 정부, 국내외 공공

기관 또는 기업체 등 법인이나 개인과 체결하는 추상적·포괄적 내용으로 구성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서면 합의서를 말하며, 법적 효력의 유무를 불문한다.

제3조(적용특례) 현지국가의 제도 및 여건 등이 상이하여 이 규정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장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준비

제4조(사업구분) 해외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자형사업이란 공사가 현지국가에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여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2. 비투자형사업이란 공사가 현지국가에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정보수집) 주관부서장은 해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공관 등 유관기관,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① 주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 등의 확인, 추가적인 자료입수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지조사 시 현지국가의 법률 및 세제 등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국가의 사정에 정통한 국내 또는 현지법인 등과 동행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의2(양해각서 등의 체결) 해외사업 관련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실의 검토, 법률·계약 전문가 등 2명 이상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외부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규 또는 언어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법무실의 검토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사업예비타당성 검토) 투자형사업의 경우 주관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투자여건 및 예상수익률 분석 등을 통한 사업예비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4조에 의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절차와 통합하여 예비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8조(관련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마련) 공사는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하고자 현지국가 및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공사초청 연수 등 상호간 인적교류 증진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해외근무직원 파견) 공사는 현지국가에서 사전조사, 국제입찰, 계약체결, 인·허가 협의, 사업관리 등의 해외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근무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해외사업 역량 강화) ① 주관부서장은 지속적인 해외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외사업 유경험자, 해외교육 연수과정 이수자 및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자 등을 위주로 해외전문인력군을 구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

리·육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전문인력군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수행

제11조(사업추진반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설립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사업의 수행에 따른 리스크 분석
3.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투자규모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4. 단독투자, 컨소시엄 참여 또는 지분투자 등 사업참여방안에 관한 계획
5. 사업의 관리 및 운영계획
6. 사업투자비 산출내역
7. 사업 실행예산 등 재원조달 방안
8. 인력투입계획 및 업무분장
9. 연도별 사업계획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계획의 수립, 입찰제안서 작성 및 계약체결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사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사업추진팀을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

2. 입찰 등 프로젝트 수행경험이 있는 직원

3. 일정수준의 어학능력을 갖춘 직원

4. 그 밖에 주관부서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직원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별 추진계획의 수립을 제2항에 의한 사업추진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장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마련시 예산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컨소시엄 구성 등) ① 주관부서장은 사업실적,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 등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사항에 부합되는 입찰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사업의 성격·규모 등에 적합한 파트너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업체 등과 컨소시엄, 합작회사 등(이하 “컨소시엄 등”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현지국가 또는 인근 국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동종 프로젝트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현지어에 능통한 인력과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및 시공 등 해당 분야에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현지에 법인 또는 지사가 설치되어 있는 업체

4. 그 밖에 사업참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컨소시엄 등을 구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성원 간의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1. 사업개요 및 목적

2. 컨소시엄 등의 성격 및 주관사

3. 컨소시엄 등의 구성원 간 업무범위,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

4. 수익분배방식 및 소요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

5.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6.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사업 타당성심사 등) 주관부서장은 제4조의 해외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의 검증을 위하여 제24조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되, 투자형사업의 경우 투자의사결정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4조(입찰) ① 주관부서장은 발주자로부터 입찰초청서가 도달하거나 국제입찰이 공고되면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입찰 운영절차 및 세부심사기준, 입찰관련 필요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12조에 따라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참여 등에 소요된 경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등) ① 주관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조건 등 법률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와 현지기관간의 사업추진에 따른 협의 등에서 상호간의 제시조건 또는 사업추진 과정상의 협상항목 등의 위시리스트(Wish-List)를 작성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조건 등의 검토가 필요할 때는 계약담당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내용 및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해외지사 등 설립) ① 주관부서장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지사 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지사 등이 기획재정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자회사 등에 해당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지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해외건설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인허가 등) 주관부서장은 현지국가의 법령이나 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착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조사설계 등의 시행)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입찰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개발사업소의 설치) 공사는 필요한 경우 사업단위별로 개발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지여건에 맞게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시공평가) 공사는 해외사업의 기술수준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조성용지 및 주택의 공급) 공사는 인허가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공급조건 등에 따라 조성용지 및 주택 등을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준공확인 등)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장은 준공시점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준공사실 통지 및 준공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그 사실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해외지사 등의 청산) ① 주관부서장은 사업이 종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외지사 등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이 종료된 후 잔여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지사 등의 규모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의 종결 및 이관에 관한 사항
2.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해외지사 등의 청산, 폐쇄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종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내용 등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외근무직원은 제1항에 따라 철수할 경우 잔여재산 등은 사전에 본국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경우 해외근무직원은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

정 등에 따른 신고기관에 신고 등 청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제24조(설치) 주관부서장은 해외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타당성 및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5조(구성) ① 리스크위원회는 17명 이내의 위원장,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은 동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되고, 리스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심의안건을 부의한 해외사업주관부서 담당부장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예산담당부장, 사업심의담당부장, 조직관리담당부장, 개발담당부장, 재무담당부장, 감사담당부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⑤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사전에 위촉한 해외건설사업 관련 개발기획, 기술관리, 금융·세제, 계약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위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① 리스크위원회는 제1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투자형 사업의 경우 경영투자심사 이전에 투자타당성 및 국가・환율・금리 등에 따른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Contingency Plan)에 관한

사항

2. 비투자형사업인 경우 입찰의향서 또는 제안서 제출전 참여의 당위성, 사업성, 리스크 요인, 제안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운영) ① 리스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심의안건을 미리 위원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사업 리스크위원회 출석안내서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리스크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참석은 불허한다.

③ 사업의 성격상 대외보안 또는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로 서면결의 하거나 해외사업담당이사의 승인을 얻어 리스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의결) ① 리스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투자형 사업의 경우 주관부서장은 리스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따라 경영투자심사에 부의하되, 리스크위원회 의결 이후 경영투자심사 부의 이전에 경미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부의할 수 있다.

제29조(회의록 작성) 리스크위원회가 열린 경우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유지의무)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안건 및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지급) ① 위원장은 리스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에이전트 등 활용) 주관부서장은 특정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현지조사 등 사업준비, 계약협상 및 체결 등 사업참여, 사업수행, 사업종료 등에 필요한 경우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용역 및 자문) 주관부서장은 제5조의 정보수집, 제6조의 현지조사, 제7조의 사업예비타당성 검토, 제11조제2항의 사업계획 수립, 제15조제1항의 계약조건 검토 및 위시리스트(Wish-List) 활용, 제16조의 해외지사 등의 설립, 제23조 해외지사 등의 청산 등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에 용역이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 전에 이미 방침 등이 결정되어 사업추진 중인 경우

또는 공사와 현지정부 간의 양해각서 등이 체결되어 후속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3.26>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출석안내서

수 신 :

년도 제 회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년 월 일 시

2. 장 소 :

3. 심의안건 :

가.

나.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위 원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제27조제2항 관련)

의 견 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안 건 :

위원명 :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위원성명	의 견	비고
심의 의결	찬 성 ( ) 조건부 찬성 ( ) 반 대 ( )	
심의 의견		

[별지 제3호서식] (제29조 관련)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관리대장

회의차수	일자	의안번호	건명	제안부서	심의내용	비고

[별지 제4호서식] (제29조 관련)

(제 회)

해 외 사 업 리 스 크 관 리 위 원 회 회 의 록

(년 월 일)

일 시 : 년 월 일( )

장 소 :

총 위원수 : 인

출석위원수 : 인

위 원 장 :

위원장의 년도 제 회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개회선언 및 제안 설명으로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 산회한다.

회 의 목 록 표

의 안 번 호		제 안 부 서	
건 명 : 심의결과 : 주요의견 :			

년 월 일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위 의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명날인함.

위 원 장

위 원

위 원

…

[별지 제5호서식] (제30조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 기간 중 알게 된 국가 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기밀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른 징계 등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 하